

CEN/CENELEC INTERNAL REGULATIONS(내규)

● 목 차 ●

제2부 A장 CEN/CEN ELEC 유럽규칙 적합성 마크제도 - CEN 내에서의 시행규칙	
1	개요
2	CEN 인증활동의 관리 책임
2.1	CEN 인증위원회
2.2	국가적 차원에서의 책임
2.3	CEN 중앙사무국의 책임
2.4	연례 검토 및 조사
3	총괄 규정
3.1	투표
3.2	보안유지
3.3	언어
3.4	CEN/CENELEC 유럽마크의 관리에 관한 CEN회원국들의 책임
4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준비
4.1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를 위한 사업의 선택
4.2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 규정의 개발
4.3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 규칙의 티택 및 보급
4.4	제도 조정 및 관리 회의
4.5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 규칙의 검토 및 수정
5	인증 절차
5.1	마크 사용권 허가 절차
5.2	최초 시험 및 검사
5.3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 제도의 사용권리
5.4	사후관리 절차
5.5	불만처리
5.6	부적합시의 조치
5.7	이의제기 절차
5.8	요건 및 규정의 수정
5.9	제조자와의 관계의 종료
6	기존의 CEN/CER 제도의 전환기간
제2부 B장 : CEN/CENELEC 유럽규칙 적합성 마크제도 - ELSECOM 내에서의 시행규칙	
1	개요
2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 가입신청
2.1	권한위원회기관
2.2	권한위원회기관의 파악
2.3	마크의 유효기간
3	제조자의 소재지

제2부 A장: CEN/CENELEC 유럽 규격적 합성마크제도 CEN 내에서의 시행규칙

1. 개요

CEN의 정관에 규정된 임무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기술적 성격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 장벽의 제거에 의해 상품과 용역의 개발을 촉진한다. 따라서 CEN은 국제 표준화기구(ISO) 및 기타 유럽 및 세계적인 이해를 대표하는 민간기구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기술적, 과학적 및 경제적 절차를 시행한다. CEN은 규격에 대한시험결과의 상호인정절차 및 유럽의 규격적 합성평가 절차가 CEN 및 타 당사자에 의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개발을 촉진한다.”(CEN / CENELEC 내규 Part 2, Clause 1-1-1)

유럽규격에 대한 자신의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코자 하는 유럽의 사업 파트너들은 그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어느 이증제도라도 활용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 결과 및 인증에 대한 상호 인정에 관한 총괄적인 정보는 CEN MEMORANDUM NO. 2 (상호인정은 EOTA(유럽시험인정기구)에서도 공식

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에 기술되어 있다. 유럽의 파트너들은 또한 ‘CEN / CENELEC European Mark System’이라 불리우는 「CEN / CENELEC 내부 제4부-인증」의 제1부 CEN / CENELEC 유럽규격적 합성마크제도의 기본원칙-편에 나와 있다.

이 문서는 CEN / CENELEC 유럽 규격적 합성마크제도의 시행을 위한 CEN의 접근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 파트너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조건을 수록하고 있다. 이 문서는 CEN / CENELEC 내부 제4부-인증-의 제2부 A장이다.

2 CEN 인증활동의 관리 책임

2.1. CEN 인증위원회 (CEN 인증위원회는 CENCER Steering Committee(운영위)를 대신할 수 있다.)

(제1부 5.1조)(여기에서 제1부란, CEN/CENELEC 유럽규격적 합성마크의 기본원칙을 말함)

2-1-1 CEN 인증위원회의 기능

CEN 인증위원회는 다음의 규칙에 의거하여 CEN의 인증활동에 대한 감독을 책임진다.

CEN 인증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보고하며, 기술위원회 및 기술부문위

원회(BTS)에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고한다. 인증에 대한 연례보고서는 총회에 제출된다.

CEN인증위원회의 기능은 제1부 5-1조에 기술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확대된다.

a) 정책 및 관리 문제 (제1부 5-1-1)

▲ 인증활동의 개시, 조직, 작업프로그램, 절차 및 조정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쟁 및 결정

▲ 정부간 기구, 국제 및 유럽기구, 유럽 무역 및 전문기구들과의 연계, 부합성평가에 관하여 CEN의 대표가 타 기관에서 브리핑하는 경우

▲ 부합성평가에 관하여 시장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규격의 준비에 있어서 기술위원회 및 BTS와의 협력

▲ 특별히 요청받은 경우, 부합성 평가 분야에 대하여 의견제시 및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b)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 제도의 개발 및 감시(제1부 5-1-2)

▲ 기술부문위원회(BTS), 기획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의 권고를 나열한 새로운 인증제도에 대한 제안을 검토 및 결정

▲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 제도의 시행을 감시하고 개선하여 CEN 중앙사무국의 지원 효율성을 감시함.

c) CEN / CENELEC 유럽마크의 운영(제1부 5-1-3)

▲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 제도에 의거하여 CEN / CENELEC 유럽마크의 운영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내부감사결과를 검토하고 모든 인증제도의 정확한 운영을 위한 모든 조치를 기획, 감독함.

d) CEN / CENELEC 유럽규격적합성마크제도의 재정 검토(제1부 5-1-4)

- 마크의 사용권리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모든 재정적 문제 총괄(제1부 5-1-11)

▲ 인증제도 관련 전반적인 재정문제를 담당하여, 특히 사무총장의 제안이 있을 경우, CEN / CENELEC 유럽마크의 사용에 대해 제조자가 납부해야 할 인증료를 결정함(여기에는 신청처리수수료(시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e) 이의제기에 처리(제1부 5-1-12)

▲ 현 인증규칙에 의거하여 이의제기 건을 검토

2-1-2 회원자격

▲ CEN의 회장, 부회장 중 또는 총회가 2년의 임기로 임명한 행정위원회의 임원 중 1인이 의장이 됨. 임기는 1회 연임 가능하며, 의장 유고시에는 잔여회기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임명한 의장이 임무 대행.

▲ 국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CEN과 연락관계를 체결한 CEN회원국이 임명한 2년 임기의 연임 가능한, 인증경험이 있는, 1인의 영구직 대표 및 1인의 부대표. 각 국가대표는 1표를 갖는다.

▲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 제도를 시행하는 각 CEN 산하기관 출신의 1인의 영구직 대표 및 1인의 부대표

▲ 유럽차원에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CEN 관련 단체 출신의 최대 6인 까지의 대표

▲ CEN / CENELEC 유럽마크를 기용하는 산업부문별, 최대 3인 까지의 대표

▲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 제도 내의 시험소 및 검사소에서 2인의 대표

위의 대표 중 아래 4부류들에 속하는 회원들은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2년의 임기로서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인증위원회 의장 및 CEN 사무총장의 승인하에 총회에서 임명된다.

동 위원회의 회원은 임무수행중 획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갖는다.

2-1-3 회의

인증위원회 회의는 CEN 중앙사무국이 최소 2개 회원국 대표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지시에 의해 소집한다.

의장은, 기술위원회의 대표나 유럽연합(EC) 또는 유럽자유무역연맹(EFTA)의 대표와 같은 전문가를 일부 인증위원회 결정에 참여도록 출석시킬 수 있다.

인증위원회 문서의 배포 마감기한(회의소집, 의제, 논의사항 관련문서의 제출 등)은 회의소집전 4주로 한다.

회의 종료전에, 기본결정들의 문서화된 기록이 배포·승인되며, 의사록은 회의종료후 4주 이내에 배포되어야 한다.

2-2 국가적 차원에서의 책임

2-2-1 각국이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CEN 국가회원기관이 진다. CEN 국가회원기관은 이에 대한 이견들을 조정한다. 각국의 상이한 환경에 맞추기 위하여,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국가별 운영은 다음의 사항

중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a) CEN 국가회원기관은 자국의 인증기관들을 통하여 CEN/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를 시행하고, 그 제도의 규칙 및 EN 45011의 요건을 만족토록 한다.

b) CEN 국가회원기관은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 EN 45011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적인 인증기관을 포함하여 7~8 개의 인증기관을 지명함으로써 국가적인 운용체계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CEN 국가회원기관은 그 제도의 운용자들에 대하여 국가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제도운영 회의(44참조)에서 자국의 인증기관들을 대표하여야 한다.

c) CEN 국가회원기관은 특정한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시행에 인증기관으로서 참여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위임기관으로서 1개 이상의 인증기관을 CEN에 추천한다. 이 경우, CEN 국가회원기관은 위임기관이 관련 규칙 및 EN 45011의 요건을 충족할지 여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 또는 자국에서 CEN / CENELEC 유럽인증제도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

2-2-2 위 2-2-1의 b 또는 c에 따라 CEN 국가회원기관이 인증기관들을 위임기관으로서 추천한 경우에는, CEN 과의 3자간 협약이 체결되어, 그 국가회원기관 및 위임기관들은 각기 개별의 의무를 갖는 것으로 결정된다.

2-2-3 관련 유럽규격이 시행되는

국가에 소재한 CEN 산하기관은 CEN 인증위원회에 의해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를 시행토록 허용된다. 그러한 경우 위 a, b, c 중 어느 한 절차가 적용된다.

2-2-4 용어중 '인증자(certifier)'는 이하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시행에 참여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2-2-5 모든 경우에 있어서 CEN 국가회원기관 및 산하기관은 인증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직을 CEN 중앙사무국에 통보하여 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CEN 중앙사무국의 책임

2-3-1 CEN 중앙사무국은 CEN 인증위원회의 간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절차, 규칙 및 결정의 시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3-2 CEN 중앙사무국은 CEN / CENELEC 유럽마크의 법적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부 2-2).

2-3-3 CEN 인증위원회의 결정, 특히 인증서 발급 수수료의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CEN의 사무총장은 CEN 연간 예산서 내에 기술하여 CEN 행정위원회에 제안을 하며, 여기에서 CEN 중앙사무국 내에서의 인증절차의 운용 지원수단 및 CEN / CENELEC 유럽마크의 법적 보호 및 판촉을 위한 비용을 위한 지원수단도 포함시킨다.

CEN / CENELEC 중앙사무국은 상기 기술된 예산 조치에 따라 회원국으로부터 연례적으로 CEN / CENELEC 유럽마크 인증료를 징수한다.

2-3-4 CEN 중앙사무국은 CEN /

CENELEC 유럽규격적합성마크제도의 품질보증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포함, 그 제도가 정관에 적합한지를 보장한다.

2-3-5 CEN 중앙사무국은 인증자의 지원을 받아 인증 제품의 목록을 유지, 개신하고 정기적으로 출판한다.

2-3-6 CEN 중앙사무국은 CEN-ELEC(제1부 5-2 참조), EOTC, 기타 국제적 표준화 기구들 및 유럽의 기구들과의 연락관계 유지를 보장하며 이를 CEN 인증위원회에 보고한다.

2-3-7 특정한 제품에 대하여 CEN 인증서비스가 불가능한 국가에서, CEN은 그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CEN 국가회원기관 및 인증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2-3-8 CEN 중앙사무국의 직원은 인증 절차, 결정사항에 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2-4. 연례 검토 및 조사

2-4-1 CEN 중앙사무국은 CEN 중앙사무국 차원에서 수행한 인증제도의 운영에 대한 연례검토 보고서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2-4-2 CEN 중앙사무국은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관련된 모든 기구들이 기준의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내부감사활동을 조직한다.

3. 총괄 규정

3-1. 투표

3-1-1 결정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총체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3-1-2 필요한 경우, 회의시에는 거

수로, 회의가 없는 경우 서신에 의해 표결이 이루어진다. 투표에 의한 결정시에는 CEN 국가회원기관만이 투표할 수 있으며, CEN 정관에 따라 1 회원 1 투표권을 갖는다. 기권은 투표에 가산하지 않는다. 표결 정족수는 단순과반수로 한다.

3-1-3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 관련 규칙의 승인에 관한 모든 결정은 다음의 가중투표제가 적용된다.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들은, 단순과반수 표의 획득 이외에도, 최소한 25개의 찬성 가중투표를 획득한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기권표 제외).

3-1-4 모든 반대표 및 기권표는 사용자가 첨부되어야 한다.

3-2. 보안유지

동제도에 관련된 모든 기관 및 개인은 제조사 및 관련 기관에 의한 서면승인 없이는 인증업무의 수행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3-3. 언어

CEN / CENELEC 유럽마크의 행정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는 CEN의 공식언어로 승인된다. 마크의 사용을 위한 인증서는 영어 및 해당국 언어로 기재된다. 기술문서는 CEN의 3가지 공식언어중의 하나로만 작성되고 승인된다.

3-4. CEN / CENELEC 유럽마크의 관리에 관한 CEN 회원국들의 책임

3-4-1 CEN 국가회원기관은 CEN의 정관 및 내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법적능력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이 집

합적으로 취한 조치에 대하여 법적의 무를 진다. 만일 한 국가회원기관이 자신의 능력 밖의 규정이나 조건으로 인하여 결정사항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은 필요한 재선을 위하여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CEN 인증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4-2 CEN 국가회원기관은 CEN / CENELEC 유럽마크 및 인증제도의 활용을 촉진해야 하는바, 특히 마크 관련정보, 제도의 존재 및 인증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각 분야별 시행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CEN 국가회원기관은 자신들의 공식적 출판물에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를 알리고 이해당사자에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자국어로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회원기관은 또한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인증제도의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3-4-3 CEN 국가회원기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규칙들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일에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관련정보에 대한 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마크의 법적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3-4-5 제도에 참여하는 산하기관은 위의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3-4-6 기타 마크(제1부 2-7 참조)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인증자들은 다음과같은 경우 유럽마크와 함께 자국의 국가규격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 국가인증마크가 지역의 시장 필요에 따라 상이한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의 모든 경우, CEN / CEN-

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에 정해진 전환기간 동안

4.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준비(제1부 3-2 참조)

4-1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를 위한 사업의 선택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를 위한 사업의 제안은 CEN 국가회원기관 및 산하기관, CEN 기술위원회(TC) 및 유럽의 기구들이 할 수 있다. 각국별 제안은 CEN 국가회원기관을 통해 상정된다. CEN 중앙사무국은 CEN 국가회원기관을 통해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개발에 대한 이해당사자로 부터의 지원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CEN 인증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2-11(b)의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다.

4-2.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 규정의 개발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들은, CEN 인증위원회가 설립한 제도개발 그룹 및 전문가에 의해 준비되며, 인증위원회는 그 그룹의 조직 및 업무 완료 기한을 정한다. 인증위원회는 회의소집자를 임명하며, 그러한 그룹들의 간사 할당을 승인한다.

아울러 관련 BTS/TC와의 연락관계가 수립되어진다.

4-3.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 규칙의 채택 및 보급

4-3-1 CEN 인증 질의

제도의 규칙(안)(언어에 상관 없

은)은 CEN 중앙사무국으로 제출되며, 중앙사무국은 이 안의 기준의 규칙과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인증위원회의 회원 및 CEN 국가회원 기관에 통상 2달간의 기간으로 검토를 의뢰한다.

CEN 중앙사무국은 접수한 의견을 제도개발그룹에 보내어 최종적인 제도 규칙의 입안을 수행케 한다.

4-3-2. 제도 규칙의 승인

제도 규칙의 승인은 3-1-3의 규정에 따라 회의시 또는 서신투표에 의해 국가회원기관의 공식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위하여, CEN 중앙사무국은 3개국어로 된 최종 규정안을 투표서식과 함께 회원기관에 배포한다. 투표기간은 2개월이며 1개월의 기한 연장요청을 2개월의 투표기간중 할 수 있다.

CEN 중앙사무국은 제도개발그룹의 회의소집자 및 간사와 협의하여 투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CEN의 국가회원기관에 참고로 배포하고 CEN 인증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송부한다.

▲ 투표결과 찬성시

CEN 인증위원회는 제도 규칙의 시행을 결정한다.

▲ 투표결과 반대시

CEN 인증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는 그 안이 부결된 것인지를 결정한다.

CEN 중앙사무국은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사본을 회원기관에 배포한다. CEN 중앙사무국 및 국가회원기관은 이해당사자에게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식 언

어로 된 정본은 권리의 최고주체로서 CEN 중앙사무국이 보유한다.

4-4. 제도조정 및 관리회의

제도조정그룹은 년 1회 이해당사자와 제도 논의를 위해 회의를 갖는다. CEN의 사무총장, 관련 마크제도의 의장 또는 CEN 인증위원회의 2인의 위원이 발의하여 구성된다. 제도의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제도에 관한 주목할만한 주제에 대한 협의(즉, 제도검토 필요성, 제삼국과의 관계 등)

▲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측면에서의 제도관련 인증활동에 대한 검토

그러한 회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사록 및 결의안

▲ 특정한 제도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잠정적 기술문서(시험절차, 검사 등 포함)

이 문서들은 관련 제도개발그룹의 모든 참석자들 및 인증위원회에 배포되고 이들은 적절한 사후검토를 실시한다.

4-5. CEN / CENELEC 유럽마크 인증제도 규칙의 검토 및 수정

CEN / CENELEC(내규) 유럽마크 인증제도 규칙들은 5년 이내에 검토된다.

제도에 대한 수정은 4-3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새로운 조항이 승인된 경우에는 기존의 조항은 철폐된다. 이러한 활동은 44조항에 규정된 제도 및 관리회의에서 검토되어 진다.

5. 인증 절차

5-1. 마크사용 권리의 인가절차

(제1부 4장 참조)

5-1-1 신청(제1부 4-1참조)

5-1-1-1 CEN / CENELEC 유럽마크를 사용코자 하는 제조자는 인증자 또는 CEN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가 CEN에 제출되면 CEN 중앙사무국은 신청자에게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 관련 정보와 함께 인증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5-1-1-2 신청 접수시, 제조자가 선택한 인증자는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운용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시험검사 절차 및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크의 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신청은 제조자와 선택된 인증자간의 계약체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계약서에는 CEN / CENELEC 유럽규격적합성마크제도 규정 및 관련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과 관련한 제조자와 인증자와의 계약관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5-1-2 수수료 (제1부 4-2참조)

CEN / CENELEC 유럽마크의 사용 신청시, 제조자는 아래의 인증 수수료 납부에 동의하게 된다.

▲ CEN / CENELEC 유럽마크의 사용을 위한 인가료 : 이 수수료는 CEN 국가회원기관이 청구하고 CEN 중앙사무국이 징수한다.

▲ 행정수수료 : 이 수수료는 고정된 액수이며, 인증자가 국가적 차원에서 징수한다.

▲ 시험 및 검사료 : 이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고정된 액수이며, 관련

시험 및 검사기관이 직접 징수한다.

5-1-3 마크부여 절차

CEN / CENELEC 유럽규격적합성 마크제도 및 CEN / CENELEC 유럽 마크인증제도의 규칙에 의거한 특정 제품에 대한 마크 부착 요청은 관련 인증자에 의해 배서된다.

5-2. 최초 시험 및 검사

5-2-1 위 5-1-1-2에 언급된 계약서의 접수와 동시에 인증자는 최초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 규칙에 의거하여 신청자와 필요한 일정을 잡는다.

인증자는 신청자에게 최초 시험 및 검사의 결과를 통보한다.

5-2-2 만일 인증자가 마크사용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모든 요건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정정조치를 설정하는 것은 신청자에게 달려있다. 인증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최초시험 및 검사를 반복할 것을 제안한다.

5-3. CEN / CENELEC 유럽마크의 사용 권리

5-3-1 마크사용권리의 최초허가(제1부 24부 26참조)

인증자가 마크사용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모든 요건들이 만족스럽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증자는 기정의된 모델 및 CEN / CENELEC 유럽마크 인증제도상의 관련 정보에 의거하여 인증서 및 증명서를 작성한다.

이 증명서에는 CEN 중앙사무국에 의해 감독되는 시스템(제1부 2-6

참조)에 따른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인증자 기관의 책임자의 서명이 담긴다. 인증자는 서명서의 사본1부를 CEN 중앙사무국에 제출한다.

5-3-2 사용권리의 연장(제1부 4-3 참조)

마크가 인증된 제품의 규격과 동일하고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다른 형식 및 유형의 제품에 추가로 CEN / CENELEC 유럽마크를 적용하기를 희망하는 제조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인증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자는 추가 방문을 하지는 않으나 해당 제품의 시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게 된다. 만일 시험 결과가 성공적인 경우, 마크사용 권리가 부여된다.

5-4. 사후관리 절차 (제1부 3-1-4 참조)

인증자는 제조자가 제도 규칙에 의거한 모든 특정한 인증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 한다.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조자는 인증자에게 합리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결과 인증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인증자는 이 사실을 제조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5 불만처리(제1부 4-4 참조)

인증된 제품에 대한 불만 제기는 제조자 또는 인증자에게 하거나 CEN 국가회원기관을 통하여 CEN에 하거나 또는 CEN 중앙사무국에 제기할 수 있다. 중앙사무국에 불만이 접수되면 중앙사무국은 인증자에게 이를 송부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제조자는 제

1부 4-4조에 의거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인증자는 접수된 불만이 제조자에 의해 가능한한 조속히 조사되어 질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불만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자의 조사결과 제조자가 관련 제도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래 5-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6. 부적합시의 조치(제1부 4-4 참조)

불만에 대한 조사에서 비롯된 모든 조치는 인증자에 의해 등록된 공한으로써 제조자에게 통보된다. 마크 사용 정지의 경우, 이 공한에는 정지 기간이 명시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증자는 관련 결정들을 타 인증자 및 CEN 중앙사무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5-6-1 정정조치

사후관리 결과 제도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인증자는 제조자가 통상 3개월을 넘지 않는 기한내에 정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추가 사후관리는 제조자의 비용부담으로 행해진다.

5-6-2-1 CEN / CENELEC 유럽마크의 정지는 마크의 중요성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이다.

5-6-2-2 인증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CEN / CENELEC 유럽마크의 사용을 정지시킨다.

a) 제품이 더이상 유럽규격을 만족하지는 않으나 부적합이 마크사용 권리 회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정도인 경우

b) CEN / CENELEC 유럽마크의 사

용 권리를 인가하기 위해 제조자가 체결한 계약을 제조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c) 정정조치가 5-6-1에 의거하여 취해지지 않은 경우

d) 안전, 보건 및 환경적 요소가 결부된 경우

e) 제조자의 요청시, 예를 들어 관련 제품의 생산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경우. 이 경우, 정지의 조건은 제조자와 인증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5-6-2-3 인증자는 다음 정보와 함께 정지사실을 제조자에게 통보한다.

▲ 정지기간

▲ 사유

▲ 정지의 이행방법, 특히 시장에 기 출하중인 마크부착 제품에 대한 사항(즉, 제품수거, 구매자에 통보 등)

▲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제조자가 만족해야 하는 조건들. 여기에는 정지기간 종료시 인증자가 실시하는 최초 시험 및 검사에 대한 합격이 포함된다.

정지의 해제는 인증자가 제조자에게 통보한다.

5-6-2-4 정지 및 해제는 타 인증자 및 CEN 중앙사무국에 통보된다.

5-6-3 사용 권리의 회수/취소

권리의 취소는, 5-6-1 및 5-6-2에 의거한 조치가 효력을 보지 못하는 경우 또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인증자가 시행한다.

타 인증자 및 CEN 중앙사무국은 이 사실을 통보받는다. 제조자는 5-7조에 의거하여 인증자의 결정에 이의 제기할 수 없다.

5-6-4 정지 또는 취소시의 CEN / CENELEC 유럽마크 제품의 판매

위 5-6-2 및 5-6-3조에 의거한 정지

및 취소의 경우, 안증자는 부적합의 정도에 따라 제조자가 공장 및 시장에 있는 제품에서 CEN / CENELEC(국제내규) 유럽마크를 제거토록 요구한다.

취소의 경우 인증자는 CEN / CENELEC 유럽마크 제품의 수거 권한을 위임받지만 그 위임기간은 제한적이다. 이 경우, 인증자는 제품수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5-7. 이의제기 절차(제1부 4-5)

참조

제조자는 CEN 인증위원회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CEN 사무총장은 동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게 되며, 이 보고서는 최소한 심의 1개월 전에 당해 회원에게 제출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회원국들의 단순 과반수 투표에 의해 결정되며, 최종적인 것이 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CEN 사무총장에 의해 제조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된다.

5-8. 요건 및 규칙의 수정

5-8-1 CEN이 마크사용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이나 규칙을 수정할 경우 인증자는 이를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8-2 인증자는 제조자에게 등록된 공한에 의해 준수해야 할 모든 수정조치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3개월 이내에 등록된 공한에 의해 수정된 요건이나 규칙에 따라 제품인증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자는 시험 및 검사를 수반하게 될 새로운 요건 및 규칙의 시행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8-3 위 5-8-2의 규정에 따라 제조자는 수정된 규칙을 적용할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받는다.

만일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마크사용권리가 5-6종에 의거하여 정지되게 된다.

5-8-4 제조자가 마크 사용 권리 행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자는 제작자에게 마크사용권리가 정지되는 일자를 알려주어야 한다.

5-9. 제조자와의 관계의 종료

5-9-1 제조자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협약에 의한 모든 권리가 취소되고, 제조자의 모든 재정적 및 기타 의무사항이 해결된 경우

b) 제조자가 부도, 파산 또는 마크 사용 권리에 따른 제품의 제조정지를 당한 경우

5-9-2 인증자가 마크사용권리에 따른 분야에 더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인증자는 이 사실을 제조자에게 통보하고 피인증자의 권리를 보호할 다른 인증자의 목록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5-9-3 CEN 인증위원회가 특정한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운영을 종결키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은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된다.

제조자와의 관계 종료는 인증자가 등록된 공한으로써 제조자에게 공식 통보하여야 한다.

6. 기존의 CEN 제도의 전환기간 (제1부 1-3참조)

CEN 내부 제3부 제2판 인증업무 지침서에 의거하여 기 채택된 CEN CFR마크제도의 제반 규정들은 이 규정 43조에 의거한 새로운 인증제도 규정들로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 CEN 내규 제3부 제2판 인증업무지침서는 새로운 제도의 개발을 제외하고는 운영중인 제도들의 행정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동 내규는 CEN 인증마크가 더이상 활용되지 않을 때 폐지된다.

제2부 B장 : CEN / CENELEC 유럽규격적합성마크제도 - ELSECOM내에서의 시행규칙

1. 개요

ELSECOM이 권장하는 분야에서 유통되는 각 상호인정협정 (MRA)에는 자체 판단에 따라 CEN / CENELEC 유럽마크의 사용을 규정할 수 있다.

ELSECOM은 CEN / CENELEC 유럽규격적합성마크제도의 규정을 만족하는 MRA에 대하여 CEN / CENELEC 유럽마크의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CEN / CENELEC 유럽규격적합성 마크제도의 규정을 채택하더라도, 관련 MRA의 체약국들이 원할 경우에는 전자기술 분야에서 기준에 공통적으로 합의한 특정마크, 즉 전자부품에 대한 CECC마크, 전기케이블 및 코드에 대한 HAR마크 및 조명기구 및 관련부품에 대한 ENEC 마크와 같은 마크의 지속적인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2.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 가입신청

2-1. 권한위임기관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 규정의 시행을 위임받은 기관들은 ELSECOM의 관장하에 운영되는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한 인증기간으로서 ELSECOM에 의해 CEN / CENELEC 유럽마크의 사용을 인가받은 기관이다.

2-1. 권한위임기관의 파악

유럽마크에 기재된, CEN / CENELEC 유럽마크를 인가한 권한위임기관 식별코드(2월호 참조)는 3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 ELSECOM 관장하에 운영되는 MRA의 경우, 한자리는 알파벳으로서 마크가 인증된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를 나타낸다. 이 글자코드의 할당은 ELSECOM 간사가 부여한다.

▲ 다른 두자는 마크를 인가한 권한위임기관을 나타낸다. 이 숫자는 관련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책임하에 할당되며 ELSECOM의 간사에 의해 관리된다.

2-3. 마크의 유효기간

규격이 개정되는 경우, CEN / CENELEC 유럽마크의 유효성에 대한 제한이 CENELEC Memorandum 6 “CENELEC회원국가 내에서의 제품인증근거로서의 새로운 규격채택”의 규정에 따라 주어진다.

CENELEC Memorandum 6은 또한 형식시험의 근거로 사용되는 규격에 적용된다.

10년간 변경되지 않은 규격에 근거하여 인가된 인증서에 대하여, CEN / CENELEC 유럽마크인증제도의 규칙에서는 재시험 규칙을 규정할 수 있다.

제조자가 특정한 품질시스템 및 또는 기타 사후관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품이 더이상 EN 또는 HD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부의 규정에 따라 마크의 사용 인증을 정지 또는 폐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권한위임기관의 책임이다.

3. 제조자의 소재지

CEN / CENELEC 유럽마크는 CENELEC 회원국 또는 타 지역에서 제조되고 CENELEC 회원국중 한 국가 내에 소재한 회사의 책임하에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회사의 책임에는 최소한 설계 및 품질관리가 포함되어야 하며 잘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제3국에 소재한 제조자 또한 그 국가에서 동일한 규격이 적용되고 CEN / CENELEC 유럽마크에 일치하는 규칙의 모든 규정들에 대한 호혜성이 그 국가에서 보장되는 한 CEN / CENELEC 유럽마크를 신청할 수 있다. **Ko**